축사시설현대화(자치단체, 융자)

세부사업명	축사시설현대화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								
내역사업명	축사시설현대	화(자치단체, 융	: 자)			예 · (백민			96,628
사업목적	축사 및 축산 경쟁력 확보	시설 현대화를 도모	통한 생산성	성 향신	방 및 환	환경개선	으로 축	투산입	검
사업 주요내용	축사 신축 및 개보수, 방역・방제 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축산농가 및 법인								
지원한도	축종별로 다름	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	지방비		융지	:	80	자부	담	20
	(단위 : 백만원)								
	구 분	2017년	2018년	1	20)19년		202	0년
연도별	합 계	278,136	235,53	0	22	3,350		273,	910
재정투입	국 고	16,244	9,744			-		-	
현황	융 자	108,265	113,68			3,680		96,6	
	이차보전	122,500	65,000			5,000		122,	
	자부담	31,127	47,106)	44	4,670		54,8	3/2
담'	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								
농림축	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044-201-2336								
자:	유미랑 044-201-2337 가치단체 축산관련부서 유미랑 044-201-2337								
신청시기	-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								
관련자료	농림사업정보	시스템(AGRIX)	사업시행지	침서					

'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(안) 주요 신·구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Ⅱ.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	Ⅱ.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	
2. 지원자격 및 요건	2. 지원자격 및 요건	
< 후순위 >	< 후순위 >	
나) <u>가금 밀집지역(16개 지역)에</u> 서 축산개편에 참여하지 않 는 지역 내에 가금농가 * 다만, 방역시설만 지원하는 경우 는 제외	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 분(징역, 과태료, 과징금, 영	법령을 위반한 자는 후순위로 지원
< 지원 제외 > ○ 과거 2년간('17.1.1일 이후) A I·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	< 지원 제외 > ○ 과거 2년간('18.1월 이후) 고 병원성AI·구제역 발생 이 력이 있는 농가(아프리카돼 지열병은 '20.1월 이후) 	ASF 발생농가

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	축산경영과	과 장 송태복	044-201-2331
	축산경영과	서기관 김성구(총괄 및 양돈·꿀벌)	044-201-2336
	축산경영과	사무관 조재성(한우)	044-201-2332
トコミル	축산경영과	사무관 이상훈(가금・양・기타가축)	044-201-2338
농림축산 식품부	축산경영과	사무관 임지헌(낙농・육우・사슴)	044-201-2340
行舌子 	축산정책과	사무관 이덕진(말)	044-201-2324
	축산경영과	사무관 정준구(전문 종축장)	044-201-2342
	축산환경자원과	사무관 조희윤(가축분뇨·악취)	044-201-2362
	종자생명산업과	사무관 이미영(곤충시설 현대화)	044-201-2472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○ 한-미, 한-EU,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,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

2. 근거법령

○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(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,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′16년	′17년	'18년	'19년	'20년(안)	′21년이후
합 계	262,285	278,136	235,530	223,350	285,075	(미정)
국 고	28,257	16,244	9,744	_	_	
융 자	83,271	108,265	113,680	113,680	105,560	
이차보전	122,500	122,500	65,000	65,000	122,500	
자부담	28,257	31,127	47,106	44,670	57,015	

Ⅱ. **2020년**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'14.12.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
 -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(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) 지원 가능 (관련 조항: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제9항 및 [별표6] [2]-③)
 - ② 축사 신축,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
- <u>또는</u>,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(만 50세 이하)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(만 50세 이하)
 - * 경력·졸업 확인 : 근무 농장 및 고등·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< 선정 우선순위 >

①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

1순위

- ②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('사' 항목) 우선 지원
-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2순위에서 결정
- 가)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
- 나)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다) 무허가 축사*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
 - \star 관련조항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 ~ 12 조 및 「건축법」제11조
- 라) 동물복지형 축사(산란계에 한함)를 설치하는 경우
 - * 산란계 케이지는 「축산법 시행령」 개정 완료('18.7.10일)
- 마)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
- 바) 당해년도(2년차 사업 포함)에 방역·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·악취저감 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%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
 - * 가축분뇨처리지원, CCTV등 방역인프라(CCTV, 방역시설, 말벌퇴치장비)를 포함

- 사)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거나, 단순 기자재 구입·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
 - * 시·군·구에서 소송,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
- 아) 스마트 축사로 신축·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(전문형에 한함)
 - 다만,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2순위로 분류(일반형) 하고, 축사 내·외부의 환경을 센싱·모니터링, 사료 자동 급이·음수기, 악취측정·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(전문형)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·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자)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
- 차)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(종계·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), 철새도래지* 3km 이내,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
 - * 「축산법」하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
- 카)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

2순위

- 1순위 선정 후 예산(지원액)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
-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
-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
- 가)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
 - * 관련조항 : 「건축법」제23조, 「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」
- 나)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 하고자 하는 경우(1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)
- 다)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
- 라)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

- 마) 「축산법」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
- 바)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·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
- 사) 석면슬레이트 축사,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
- 아) 공동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
- 자) 과거 1년간('19.1.1일 이후)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(선정된) 농가
- 차) 한센인 정착촌
- 카) <mark>과거 2년간('18.1월~'19.12월)</mark> 사육제한 명령(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 의4) 또는 가축사육제한(휴업보상)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
- 타) 폭염,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·장비·자재를 설치할 경우

후순위

- 1~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
-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
-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,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
- 가) 신규, 이전,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
- 나) 최근 3년('17~'19년)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(징역, 과태료, 과징금, 영업정지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, 인증·지정 취소)이 확정된 농가
- 다)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(닭・계란・오리・육우・양봉・사슴에 한함)
 - * '19.1~12월 동안 납입 실적(닭·계란은 '17~'19년)

일괄 예산 배정

-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,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
 - * 다만,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,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

< 지원 제외 >

-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km 이내, 농업진흥구역 내,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¹⁾하는 경우
- 종계·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·종오리 축사를 건축²⁾하는 경우
 - * 1), 2) : 「축산법」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(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)
-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
- '19.1.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, 벌금,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
 - 대상 법령: 「축산법」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, 「악취방지법」, 「약사법」
 - * 「약사법」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
 - 지원 제한 기간
 - 1)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벌금 : 3년
 - 2) 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정지(조업중지· 사용정지): 2년
 - 3) 과태료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* : 1년
 - * 다만.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
 - 4)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: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
 - * 다만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
- '18.1.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·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
 - * 다만, 사업대상자가 인증ㆍ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 - 대상 인증·지정 : 친환경 축산물 인증, HACCP 인증,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
 - 관련법령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24조(인증의 취소 등)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9조의4(인증의 취소 등)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조(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) 제4항, 「동물보호법」제2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 제4항

- <mark>과거 3년간('17.1.1일 이후</mark>)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%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 마감일 연장한 경우
 - * 다만, 추가 선정(사업대상자 변경)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
- "CCTV 등 방역인프라"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
-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
 - 축사·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
 - 다만,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
 - *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「가축분뇨법」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(단,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)
- 미신고 승마장·승마시설
- <mark>과거 3년간('17~'19년</mark>)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.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*(지원액의 30%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)하거나 포기한 경우
 - *「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」의 경우 최종 70% 이상 불용한 경우
- ○「축산법」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(보수교육) 미이수자
-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
 - 다만,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○「공정거래법」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(「FTA농어업법」 제5조)
- 신규, 이전,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
- 과거 2년간('18.1월 이후) 고병원성AI·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(아프리카 돼지열병은 '20.1월 이후)
- ◈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: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,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(사업대상자 선정 무효) 조치함
 - *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·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,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
- 축사, 축사시설, 축산시설, 방역시설,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,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
 - 건축비에는 설계비, 감리비, 철거비 등 포함
- 축사 :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,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, 골조, 축벽, 지붕 등에 지원 가능
 -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, 개보수,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「축산법」의 허가·등록 기준과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의 방역·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축사시설 :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
 -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, 급수시설, 전기시설, 착유 시설, 환기 시설, 조명 시설, 발열 시설, 소방 시설 등
 - (양돈) 쿨링패드,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, 분만틀, 스톨, 슬러리 시스템,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, 제조실
 - (가금) 발육기, 발생기, 이란기, 콘트롤기, 세척기, 부화중지란 처리기
 - (소) 로봇착유시설, 자동포유기, 발정탐지기, 송아지 우리, 소몰이 장치, 착유실 매트, 사료 자동 급여기, 소 체중저울, 자동목걸이,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
 - (양봉)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(소초광만 지원 불가)
 - (말) 육성·조련 마사시설 등
- 축산시설 :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
 - (가금) 계란·종란 보관창고, 집란기, 계란 세척기·선별기, 부적합란 처리기기, 포장기 (양돈) 자돈 인큐베이터, (양봉) 양봉산물 저장고·창고, 꿀 저장용기, 채밀기, 농축 시설,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·리프트, (말) 자동보행기 등

- 폭염·혹한 대비 시설·장비·자재 : 선풍기, 환기·송풍팬, 쿨링패드, 안개분무기,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, 차광막(지붕·벽 단열재, 차열페인트), 열풍기 등
- 방역・방제시설: 울타리(또는 담장), 농장출입문, 차량 세척·소독 시설·장비, 대인소독시설·장비, 방역실, 축사전실,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, 출입통제시설(CCTV 등), 울타리, 해충구제램프, 말벌 퇴치장비(트랩 등),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
 - *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
 - 축산물품 보관시설 : 깔짚저장고(창고), 물품저장고(창고), 사무실 등
 - *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
- 가축분뇨처리시설: 「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」의 "깨끗한 축산농장 조성"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(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, 착유 세척수 처리 시설 등 포함)
 - 악취저감시설: 악취를 포집하거나, 미생물·훈증·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(ICT악취측정기 등 포함)
- 기타시설 : 출하분류기, 폐사축 처리시설(냉동고 포함), 사료배합기,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·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
 -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: 환기장치, 가스농도 측정기, 공기 호흡기, 송기 마스크 등
 - *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
- 경관개선시설 :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(밀원수 포함), 조경식물 식재, 화단 공사 등
 - *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, 축사 신개축, 축사 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
 - 태양광·열(건축물에 설치), 지열,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
 - 다만,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

4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< 지원 형태 >

- 중·소규모(FTA기금) 및 대규모(이차보전) : 융자 80%, 자부담 20%
 - * 이자율 : 중·소규모 연리 1%(대규모 2%), 5년 거치 10년 상환
-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·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
 - * 중 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
-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
- (농가 분류 기준) '14.12.31일 기준 축산업 허가·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
 -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·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, 농어업 경영체 D/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
 - * 축산업 허가ㆍ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
- (사업기간) 1년
 - 부지 확보(변경)가 필요한 축사 신축·이전·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(1년차 50%, 2년차 50% 지원)
 - * 다만, 시·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 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

< 사업 의무 준수사항 >

-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「축산법」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
 - (사육밀도) 0.05㎡/마리 → 0.075, (단수) 9단 이하, (케이지 사이 복도) 폭 1.2m 이상, 3~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
 - 그 외 축산업(축종)은 향후 「축산법」 개정 내용,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

- ○「축산법」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방역· 소독시설을 설치·구비
 - (방역시설) 사람·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
 - * 농장출입구에 사람·차량에 대한 소독시설(차량소독조) 설치
- (목적에 부합하는 사용)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 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
- 축사의 신축·재축·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·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,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(소, 돼지, 닭, 오리, 메추리에 한함)
 - 다만,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·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*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,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
-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
 -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·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, 농어업 경영체 D/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
- ※ 지자체 확인 사항: 「축산법」의 축산업 허가·등록기준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의 방역·소독시설 설치 여부
 -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
 -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,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(준수하지 않을 경우, 지원대상자에서 제외)
 - ③ 사업 완료 후,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축종별 수급동향, 사육특성,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
-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
-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'전문 종축장 체계화' (원종축장+종축장)를 하려는 경우
-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
-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「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」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
-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,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(다만,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)

< 지원액 산정 기준 >

- (농가별 상한액)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
 - 단,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'최대상한액' 초과는 불가
 -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,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
- 동물복지(형) 축사시설(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)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%까지 상향 지원 가능
 - * 지원단가 상향(예시): 산란계 720천원/m² → 792. 육계 360천원/m² → 396
 - * 상한액 상향(예시) : 산란계 3,600백만원 → 3,960, 육계 1,800백만원 → 1,980
-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
- (면적기준)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
 -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 하나,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
 - *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

<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>

			FTA기금(중·소규모)	이차보전(대규모)		
	구 분	축사 면적당 지원단가	지원 대상 면적(m², 이상~이하)	지원 최대 상한액	지원 대상 면적(m², 초과~이하)	지원 최대 상한액	
	한(육)우	260천원/m²	110~1,920	500백만원	1,920~4,800	1,248백만원	
(종	양돈 돈,인공수정 포함)	770천원/m²	265~3,200	2,464백만원	3,200~8,000	6,160백만원	
	육계 (토종닭 포함)	360천원/m²	460~5,000	1,800백만원	5,000~12,500	4,480백만원	
양	종계 (토종종계 포함)	450천원/m²	915~8,250	3,712백만원	8,250~16,500	3,712백만원	
계	부화장 (토종계 포함)	1,500천원/m²	100~900 (16~150)	1,350백만원 (225백만원)	900~1,800 (150~300)	2,700백만원 (450백만원)	
	산란계 (산란중추 포함)	720천원/m²	420~5,000	3,600백만원	5,000~12,500	9,000백만원	
	육용오리	360천원/m²	820~7,000	2,520백만원	7,000~14,000	5,040백만원	
오 리	종오리	450천원/m²	555~4,995	2,248백만원	4,995~9,990	2,400백만원	
'	오리 부화장	1,500천원/m²	33~300	450백만원	300~750	1,125백만원	
	낙농	260천원/m²	213~2,000	520백만원	2,000~5,000	1,300백만원	
	양봉	833천원/군	30~300군	250백만원	300~600군	500백만원	
	사슴 (엘크)	185천원/m²	150~1,350 (200~1,840)	250백만원	1,350~2,700 (1,840~3,680)	500백만원	
	양과 흑염소	218천원/m²	165~1,485	324백만원	1,485~2,970	560백만원	
	말	600천원/m²	50~260	156백만원	260~768	460백만원	
	메추리	720천원/m²	100~3,000	2,160백만원	3,000~7,500	5,400백만원	
	토끼	180천원/m²	70~1,050	189백만원	1,050~2,625	473백만원	

< 공통 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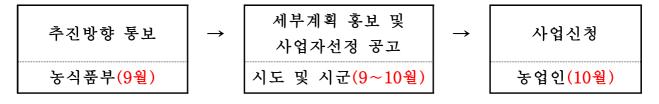
- ① 총 사업액의 80% 지원액 기준임
- ② 가금 가설건축물(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)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·군·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%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
-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

< 축종별 특이 사항 >

- (한우·낙농) 자가배합사료(TMR)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초과분은 자부담)
- (가금)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·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"CCTV 등 방역인프라"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·장비 지원 가능
- (양봉)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(초과분은 자담)
 - *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·소규모 농가여야 하며,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
 - *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 하고,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·군·구에 보고
 - * 시·군·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
 - *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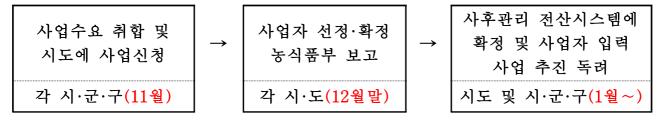
1. 사업신청단계



-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9월 15일까지 가내시(안)을 시달
- 농식품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(9월)
- 농가는 시·군·구(축산담당부서)에 <서식 1>에 따라 사업 신청(10월)
 - 전문 종축장은 <서식 1-2>에 따라 사업신청
 - 시·군·구는 <별표 1>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<별표 2>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
 - *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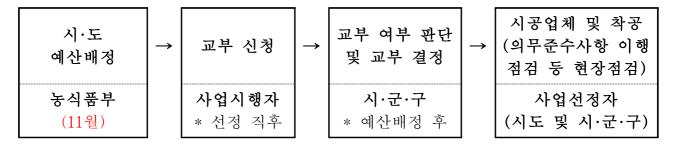
- 시·군·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(방역시설 구비 등)을 안내하고,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
 - * 「축산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·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
 - 또한,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, 농지법,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
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시·군·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, 시·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(11월)
 -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·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
- 시·도는 예산 현황, 적격 여부, 지원내용, 지원조건,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 한지 확인하고 시·군·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(12월)
 -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,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
- 각 시·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<서식 4>에 따라 보고(12월말까지)
- 시·군·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
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(인 허가 등)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
 - 교부 결정 확정(1월)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, ICT 악취측정 기계·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 지원센터(042-822-9875)에 컨설팅을 의뢰
-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 기계협회 검증 기자재,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

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

< 시·도 및 시·군·구 >

-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·도별 예산 배정(11월 조건부 배정)
-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·통지
 -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,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
 - * 농가가 건축, 토목, 전기 등 축사관련 신·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, 시설설치,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
 -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,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
 - *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, 농가가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(민원 발생, 인허가 절차 보완 중)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·군·구는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
-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·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, 건축·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·확인
-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
 -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
 - * 소규모 건축물.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

◈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▶ 「건축법」 제14조(건축신고)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- 5.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
- 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조)
 - 1.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
 - 2.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
 - 3.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< 사업 대상자 >

-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(1월)
 - *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
 -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
 - * 건축, 토목, 전기 등 축사관련 신·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, 시설설치,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
-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
 -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·허가 절차를 진행·완료토록 권장
 - *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
- 장비·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, 건축·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
-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·확인
 - 다만,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

4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

< 농림축산식품부 >

○ 시·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

< 시·도 및 시·군·구 >

-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」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
-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,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
-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」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(계약서, 세금계산서,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, 영수증 등)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・보관하되, 아래 기준 준수
 -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'사업 전용 통장'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
 -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,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
 - *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,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 부터 확인받고.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
 - 연간 자부담 2억 이상(사업비 10억)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%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
 -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,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 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
 - * 시공업체 시공 시(건축, 전기 등):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,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
 - * 장비 구매 시 : "장비 구매 및 설치 1식"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,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
 - *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조치

< 대출취급기관 >

○ 대출 실행 시 시·도(시·군·구)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 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,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

5. 이행점검단계

-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
 - 농가의 공정률,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, 필요시 시정·지도
 - *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
 -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
- 지원농가에 대해 <서식 4>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 · 보관(15년)
-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·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
 - * 농식품부는 시·군·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,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·군·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
- 농협경제지주는 축종·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(매분기 지자체→농협)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
 -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·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

6. 사후관리단계

- 각 시·군·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*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
 - *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,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
 - 점검 후 시·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, 시·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<서식 3>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
 - 방역·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
 - 농협(지역축협)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

- 현지점검 결과,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·도(시·군·구)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
 -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

○ 사후관리기간

사 업 명	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처분제한기준
축사시설 현대화 지원	기계·장비건축물가설건축물(비닐하우스 형태)	5년 15년 5년	시설·기계·장비 양도 등

- (시설 양도)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합병·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 코자 할 경우에는 시·도(사업주관기관)의 승인 후 조치
 - * 축산업이 농업법인(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)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
- (불가피한 처분)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·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,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·도의 승인 후 조치
- (담보설정) 사업 완료 후,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·도의 승인 후 조치
- (축종 변경) 시·도의 승인 후 조치
 - * 축사, 기계·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, 변경 적정성,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
 - * 일부 시설·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

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○ 평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(농협경제지주)

○ 평가대상 : 사업대상자

- 평가절차 : 사업주관기관(시·도)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, 시·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
 - * 필요한 경우 (사)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
- 평가시기 : '20년 12월말까지
- 평가내용 : 사업진척,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
-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
-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

Ⅳ.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- 1.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
- 사업주관기관(시·도)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('20년 하반기)
- 2.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 - '20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,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

〈서식 1〉

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

[농가 작성용]

	대표자명(법인명)			연락처	자택 : 휴대전회	- :		
	집 주소				11 11 62 1			
1. 사업자 현황	농장명			연락처				
	농장 주소							
	축산업허가(등록)증	증 고유번호						
* 한(육)우, 돼지에 한해 작성	참여 브랜드경영 또는 한우사업단			7	계약일시 .	년 월 현재	일 ~	
	○축 종 : 한(육)·	우, 양돈, 양	:계(산란	·, 육계, 토	종닭, 육용	-종계, 토종	종계),	
	부화장	(육용종계-	용, 토종	종종계용),	오리(육용	용오리, 종.	오리),	
	낙농(<u>3</u>	젖소), 양(흑	-염소 등	등), 꿀벌,	사슴 등으	로 구분		
	ㅇ사육형태 : 일관(), 비육(), 번	뇍(), 기	타() - ਰ	해당란에 〇	표시	
2. 경영현황	총 사육두수 병	번식(모돈, 번·	식우, 착	유 등)	육성축	자 축	_	
(현재)	마리(군)			마리	마리		마리	
	주) 현 사육기준	이며 축종(게 따라	서식 변	경 가능			
	 〈연도별 출하실	l적〉: 낙농	·의 경약	구 연 우우	구생산량(톤	<u>-</u>)		
	'16	'17		'18		' 19		
	마리		마리		마리		마리	
	사업구분 : 신축	(), 개축	- (),	개보수(), 시설교	고체()		
	- 해당란에 〇 .	표시						
	사업계획 농장	사업계획 농장 주소 :						
	신청 사업비 : 뒷면에 기재							
3. 사업계획	가축사육시설 면]적 신구대	비 : 뒷	 면에 기지	 A			
	※ 첨부서류 : ①	 축산업 허기	-(등록)	증(모든농)	가) ②사업·	예정부지 등	통기부	
	등본(신축농가	는 필수 >	제출) (3	③토지이용	· 기획 획	인원(모든	농가)	
	④신용조사서(모든농가)	⑤법인]등기부등	·본(법인에	한함) @) 우선	
	순위, 후순위	및 지원제의	외 등에	관한 증	빙자료			
상기와 같이	20 년도 축시	·시설현대	화사업	신청서	를 제출합	니다.		
				신청인	:	(인)	
) 시장·군수· ⁻	고치자	긔됬					
	/ 1787年十二	l 'ð' ð	1105					

/ x] -j]	사업비>	
_<건경	^F웝미기	•

(단위 : 천원)

					(11) • 2 0/
			사 위	걸 비	
구분	세부계획	'20년 (※ 21	년차 사업인 경우	우 '21년까지 구북	분하여 작성)
		융자	이차보전	자담	계
ラバ					
축사					
	 소계				
축사시설					
및					
축산시설	> =1)				
	소계				
방역시설					
	소계				
	소계				
ଧି					

<현재 축산업허가(등록)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>

(축산업 최	행 면 적 가(등록 육두수))면적, [공사계획	면적	사업완료후 전	체 면적
	m² (마리)	m^2 (마리)	m² (마리)

<지원한도액 확인>

정부지원 신청액(융자)	천원
정부지원 신청액(이차보전)	천원
면적당 신청액 = (정부지원액) / 공사계획면적(m²)	천원/m²

주)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(m²)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

〈서식 1-2〉

종축장(종돈, 종계, 종오리장) 전문화 사업계획서

1. 사업대상자 현황

경영체명				
대표자		사업지	번호	
川立 /「		축산업천	허가번호	
소재지		(주사업장)		
연락처	(사무실)	(핸드폰)		(팩스)

2. 일반현황

○ 사업주체 사육현황

	2	종 축(GP	')	원종축(우)		시 설			
소재지	성축	육성축	자축	(GGP, GPS)	기타	설치년도	축사형태		

- *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
- 참여(계열, 계약, 위탁 등)농가 사육현황

경영체명	대표자명	소재지	사육	규모	참여형태	전문 인력	축산업
	11五八万		종축	기타	1 삼억성대	인력	허가번호

- *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
- (종돈장의 경우) AI센터 활용(자체운영 포함)

센터명	소재지	웅돈규모	공급량	비고

○ 주체 및 참여농가(GP, PS) 사업현황

경영체명		검정실적		분인	냥실적(종	·축)	분양실적(모돈/실용축)			
	' 17	' 18	' 19	' 17	' 18	' 19	' 17	' 18	' 19	

- * 분양실적(종축)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
- * 분양실적(모돈/실용축)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

○ (종돈장의 경우)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

경영체명	네트워크참여	우수종돈장 선정 년도	방역 위생수준	친환경농장 지정

3. 사업계획

가. 사업목표

○ 종돈(종계, 종오리 등) 개량 방향, 질병 청정화 계획, 종돈공급 등

나. 사업체계도

- (종돈장의 경우) GGP, GP(참여농가), AI 간의 모식도 등
- (종계장, 종오리장의 경우) GPS, PS(참여농가) 간의 모식도 등

다. 사업추진계획

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

-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
 - *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

- GGP(GPS)와 GP(PS)간 운영, 공급 계획
-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(GGP, GPS)
- (종돈장의 경우)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

② 시설투자계획

○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세부시설	융자	이차보전	자담	계
축 사					
내부시설					
계					

- *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
-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
- ④ 담보제공
-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
 - * 개량의 방법(선발, 검정, 기타형질 개량, 국내외 개량컨설팅, 등 구체화)
-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
- ⑦ 사업손익전망
- ⑧ 자금상환계획

<별첨> 기타 관련 증빙자료(사본 가능)

〈서식 2〉

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

(시·도) (담당	자: ,)
------------	---------

단위 : 호, 백만원

	신청	합계		세부	내역		
구 분	レカム	(اد اخ ک	융자(F)	ΓA기금)	융자(이차보전)		
	농가수	요청액	농가수	요청액	농가수	요청액	
한(육)우							
양돈							
양계							
오리							
낙농							
양봉							
사슴							
양・흑염소							
말							
메추리							
토끼							
합계							

^{*} 축종별로 작성하고,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작성

〈서식 3〉

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(〇〇〇년)

□ (시·군·구 명) 지원 개요

연도	선정농가수* (정산농가수)	지원액(천원) (선정총액)	지원액 (정산총액)**
2009	10(9)	100,000	90,000
2010	9(9)	90,000	80,000
2011	11(10)		
2012	13(11)		
2013	숫자는 예시		
2014			
2015			
2016			
2017			
2018			
2019			
합계			

- *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,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 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(융자 + 보조,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)
- ** 융자+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,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,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

저 거	미사	농가	서 저	મો- મો
召召	네 '강	るノト	연성	밍밉

- (선정방법)
- 관심대상 농가 현황(방역시설 미설치·운영 미흡 농가, 지도 점검 필요 농가)
- □ (연도) (상·하반기) 점검 대상 농가 개요
 - 선정 대상 농가 내역

대상 농가 명	주소	선정년도	사업비(지원액)	점검실시일

- □ 농가별 점검결과 (농가별 반쪽~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, 필요 시 사진등 첨부)
 - (방역·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)
 - (시설 유지상황,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,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)
 - (결론 및 조치결과)
 - *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.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

〈서식 4〉

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

- * ① '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' 서식. ② 담보승인 '사전신청 서식' ③ 지자체 '관리기록부 서식'으로 통합 이용할 것
- *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

선정년모	<u>ا</u>	시・군	사 업 분류 (F T A 기고 공장 명 *			대 (축시 (축시 교체 제 종 등	대상면적(㎡) (축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공사분류 제외, 축사 종물인 경우 포함)			공사분류별 금액 (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)				주요공사	2개 년 사업 여부	무허가 축사 적법화 여부 (O								
도	도	· 구	介 公) 명	*	A 기금 / 이 차 보 전)	총 사 업 비	융 자	이 차 보 전	자 담	총농장부지면적	총축사부지면적	공사 대 상축 사 면 적	축사 신축	축사 개보 수	축사 개보 수 종 물	시설 장비	신축	축사 개보 수	축사 개보 수 종 물	시설 장비	사 내 역	여부 (O · ×)	(O • ×)

- * 축종분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
 - 한(육)우, 양돈, 산란계, 육계, 육용종계, 부화장, 육용오리, 종오리, 오리부화장, 낙농, 꿀벌, 사슴(엘크), 양(흑염소)

〈별표 1〉

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1. 수집 개인정보 항목

- 수집항목: 대표자명(법인명)·농장명·연락처(자택, 휴대전화)·주소 (집주소, 농장주소)·축산업허가(등록)증 고유번호(농장식별번호) 등
- O 개인정보 수집방법: 사업신청서, 사후관리 조사서

2. 수집 및 이용 목적

- O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
- O 사업 정보 전달,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

3. 보유 및 이용기간

O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,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·활용

4. 제공 받는자

- O 사업총괄기관: 농림축산식품부(축산경영과)
- 사업시행기관 : 해당 시·도(시·군·구) 지자체
- O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: 농협경제지주(축산컨설팅부)
- O FTA기금관리기관: 농수산물유통공사(FTA기금팀)
- O 대출취급기관: 농협경제지주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O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6.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

O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,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/타기업/기관 등 외부에 제공 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
		20	년	월	일
사업장 명칭	성명			(서명	또는 인)

○○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

본인은 ○○○○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,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,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.

- 1.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.
- 2.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(농장 정문입구)를 설치한다.
- 3.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.
- 4.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.
- 5.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(기계·장비: 5년, 건축물: 15년, 가설건축물: 5년)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.
 - ※ 다만, 합병·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.
- 7.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.

향후,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,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자 주소 : 사업자 성명 :

< 별표 3>

자조금 납입확인서(예시)

-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
- ② 시·도(시·군·구)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
- 1. 사업신청자(대표자 성명):
- 2. 주소(전화번호) :
- 3. 축산업 허가(등록)증 고유번호 :
- 4. 납입내역

(단위 : 원)

기강	도축마리수					
/ 년 		납부할 금액(A)	실제 납부한 금액(B)			
'19.1~12월						
(닭·계란은 '17~'19)						

5. 납입율(B/A): %

6. 확인자

확인주체	확인사항	직함	성명	서명 또는 인
자조금 관리위원회	'19년(닭·계란은 '17~'19년)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			
시·도 (시·군·구)	'19년(닭·계란은 '17~'19년)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			
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 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신청자 성명

(인 또는 서명)

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신청서

[농가 작성용]

1. 사업자 현황	대표자명(법인명)		연락처	자택 : 휴대전	화 :	
	집 주소			11 11 2	'	
	농장명		연락처			
	농장 주소					
	축산업허가(등록)증	중 고유번호				
	○축 종 : 한(육)·	우, 양돈, 양계, 오	리, 젖소,	닭, 양,시) 슴 등으로 구분	
	ㅇ배출시설 면적	: 허가 배출시설	(), 무히	허가 배출	출시설 ()	
	○ 사육형태 : 일관(), 비육(), 번식(), 기타() - 해당란에 ○ 표시					
0 -1 -1 -1	총 사육두수 법	번식(모돈, 번식우, 착-	유 등)	육성축	자 축	
2. 경영현황	마리(군)		마리	마	리 마리	
(현재)	주) 현 사육기준	이며 축종에 따라	서식 변기	경 가능		
	ㅇ연도별 출하실	적 : 낙농의 경우	연 우유생	산량(톤)	
	' 16	' 17	'18	3	' 19	
	마리	마리		마리	마리	
	사업구분 : 측량(), 설계(), 개년	코수(), ¹	퇴비사()	
	- 해당란에 모두	- ○ 표시				
	사업계획 농장 =	<u> </u>	\ .1 -1 -11	N - 1	11 () = =1 ()	
		- : 설계도 작성(), 이행성	제금 납	무(), 즉턍(),	
	향후 추진()					
 3. 사업계획	- 해당란에 O 표시					
0. / / 	위반요소 해소방안 :					
	적법화 이행기간 :					
	* 첨부서류 : ①축산업 허가(등록)증(모든농가) ②설계계약서③토지이용					
	계획 확인원(모든농가) ④신용조사서(농신보 특례적용 시 신용조사					
	간소화)					
사기에 가지 9090대로 무취기초가 꾸벅된 가여 가취기로 제초취기만						
상기와 같이 <mark>2020년도</mark>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			신청인	:	(인)	
○ 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

<신청 사임] p]>					(단위 : 천원)
구분	세	부계획		8	자	사 업 비 자담	계
측량							
		소계					
설계							
		소계					
개보수							
	소계						
퇴비사							
	소계						
기타							
	소계						
합 계							
<현재 축신	<u></u> - 산업허가(등록)증성	에 기재된 가	축사육시	설 면	적과 :	완공후 면적	신구대비>
현 행 면 적 (축산업 허가(등록)면적, [사업완료후 전체 면적		
사육두수)		공사계획면적					
	m²(마리)	m² (,	마리)		m² (마리)
_	기H 키이 기리제/스	-J\					=1 o1
	정부지원 신청액(융 		رد العالمال	시 권			천원
주)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신청 							